

의안번호	2216926
의 퇴 인	김도읍의원
회 답 일	2026.6.22.
추계번호	26D095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 중 사망자를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8,700만원, 2031년 5억 7,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6억 5,600만원(연평균 5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특수임무공로자 국립호국원 안장 (안 제5조제1항제4호마목)	487	507	530	555	577	2,656	53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제1호카목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국립현충원의 안장대상에 산불진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망자를 포함하도록 규정	의무규정
2	안 제5조제1항제4호마목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포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1항제1호카목(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산불진화 등으로 사망한 공무수행사망자는 연평균 0.6명으로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
2	안 제5조제1항제4호마목(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특수임무공로자로 한정하여 연도별 사망 인원내 국립호국원 안장 단가와 묘지조성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
 -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과 사목¹⁾에서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포함), 전투나 공무 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으로서 사망한 사람(특수임무부상자 포함)²⁾을 국립현충원의 안장대상으로 규정함
 - 현행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특수임무공로자가 개정안에 따라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으로 추가되는 것임

1)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2) 다만, 특수임무부상자 중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있으나, 그 규모가 미미하여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³⁾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특수임무공로자 중 기존 사망자와 추계기간 동안의 신규 사망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 본 추계에서는 특수임무공로자 사망 인원에 국립호국원 안장률 평균(45.8%)을 적용하여 안장 대상자 수를 추정한 후, 1인당 비용(국립호국원 안장비용 단가와 묘지조성비 단가의 합)을 곱하여 산출
 - 국가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특수임무공로자 중 누적 사망자 수는 1,629명으로 추정

[표 2] 특수임무공로자 기존사망 인원: 2016~2026년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록 인원	1,894	1,854	1,823	1,803	1,796	1,748
사망 인원	1,362 ¹⁾	40	31	20	7	48
구분	2022	2023	2024	2025(추정)	2026(추정)	사망인원(누적)
등록 인원	1,748	1,723	1,693	1,659	1,627	—
사망 인원	—	25	30	34	32	1,629

주 1) 2016년까지 특수임무공로자 사망자의 누적인원을 표기한 것임

2) 사망인원은 전년도 등록 인원에서 해당연도 등록 인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것이고, 2025년과 2026년은 추정치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6.3.)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3%	2.1%	2.3%	2.0%	2.0%	2.0%

- 한편,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신규 사망자는 2027년 31명, 2031년 28명으로 총 146명으로 추정
 - 국방부에서 제출한 성별·연령별 특수임무공로자 인원에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2023.12 발표)”을 적용

[표 3] 특수임무공로자 신규사망 인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특수임무 공로자	남성	30	29	29	28	28	144
	여성	1	—	—	1	—	2
	소계	31	29	29	29	28	146

주: 1) 신규사망 인원은 국가데이터처 갱신(2023.12.14.) 1세별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2) 위 표의 사망 인원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와 국가데이터처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상자 수) 특수임무공로자 중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 수는 2027년 164명, 2031년 162명으로 추정
 - 본 추계에서는 2026년 말 기준 특수임무공로자 누적 사망인원(1,629명)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한 비율(20%, 326명)로 안장하는 것으로 가정
 - 2027년부터 신규 사망자는 해당연도에 안장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안장률은 최근 5년(2020~2024년) 국립호국원 평균 안장률⁴⁾을 적용함

[표 4] 특수임무공로자 국립호국원 안장인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망인원	기존 사망	326	326	326	326	325	1,629
	신규 사망	31	29	29	29	28	146
	소계(a)	357	355	355	355	353	1,775
안장인원(=a×45.8%)		164	163	163	163	162	8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국립호국원 안장률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11,915	11,383	12,551	10,280	9,213	55,342
	실제안장자	5,766	5,260	5,794	4,650	3,885	25,355
	안장률	48.4%	46.2%	46.2%	45.2%	42.2%	45.8%

자료: 국가보훈부

- (1인당 비용) 특수임무공로자의 국립호국원 안장 시 소요되는 1인당 비용은 2027년 2,970천원, 2031년 3,564천원으로 추정
 - － 안장비용: 2025년 안장비용 단가(140천원)⁵⁾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 － 묘지조성비: 2025년 기준 국립연천현충원의 묘지조성비 단가(2,572천원)⁶⁾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최근 10년 건설공사비지수 연평균 상승률⁷⁾을 적용하여 추정

[표 5] 1인당 비용(안장 및 묘지조성) 추정: 2027~2031년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1인당 비용	안장	146	149	152	155	158
	묘지조성	2,824	2,960	3,101	3,250	3,406
	합계	2,970	3,109	3,253	3,405	3,56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 중 사망자를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8,700만원, 2031년 5억 7,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6억 5,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상자 수(A, 명)	164	163	163	163	162	815
1인당 비용(B, 천원)	2,970	3,109	3,253	3,405	3,564	—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487	507	530	555	577	2,65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2025년 기준 1인당 안장비용(단위: 천원)

구분	유골함	봉안명패	합계
단가	90	50	140

주: 유골함은 봉안당 기준이며, 봉안명패는 부부 동시합장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6)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개요(2025년 기준)에 따르면, 총 사업비 128,607백만원으로 5만기의 봉안시설을 마련하므로 묘지조성단가는 2,572천원(=128,607백만원÷5만기)

7) 건설공사비지수(2025.3.31. 발표)

구분	2016.1.	2018.1.	2020.1.	2022.1.	2024.1.	2025.1.	연평균
건설공사비지수	85.65	93.59	99.69	120.11	129.52	130.47	4.79%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특수임무공로자의 사망자 추이,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 국립연천현충원 기준 묘지조성비 단가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